

7호선 노현역 장애인화장실 민원 답변 보고

1 관련근거

- 7호선 노현역 새로 설치한 장애인화장실 내부 심각한 문제점 경사로 점자블록 설치 민원(2017.01.13.)(에이블뉴스 박종태 기자)



2 검토사항

- 민원사항 및 답변내용

민원사항	추진부서	답변내용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경사로 점자블록 부적정 (휠체어이용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사로의 점자블록 철거) 	건축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경사로 점자블록 개선¹⁾ (경사로 점자블록의 일부를 철거하여 동행 개선)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세면대 손잡이 미설치 	기계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세면기 손잡이 미설치 (관계법령에 의거 카운터식 세면대의 경우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)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용변기 등받이 부적정 (척추를 균형있고 안정감있게 지지, 한쌍의 쿠션이 좌우로 30° 기울어진 제품으로 교체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설치된 등받이는 장애인 전용제품(일반역과 동일제품)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샤워기 이용을 위한 접이식 의자 설치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필요시 추후 검토 예정 (법적 설치 의무는 없으나 장애인을 위한 배려 시설로 설치)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비상콜폰 미설치 	통신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비상콜폰 설치²⁾ 	

※첨부자료

1) 경사로 점자블록 개선

	
경사로 점자블록(개선전)	경사로 점자블록(개선후)

2) 비상콜폰 설치

		
장애인화장실(남자)	장애인화장실(여자)	장애인화장실(입구)

○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(별표 1) 이동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(제2조제1항 관련)

2. 여객시설

자. 장애인전용화장실

4) 세면대

- 가)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85미터 이하로 하고,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나)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다) 목발 사용자 등 보행이 곤란한 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카운터식 세면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라) 수도꼭지에는 냉·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.
- 마)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.65미터이상으로 하고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9미터 안팎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, 거울의 상단 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.